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유치인에게 진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외부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 가. 사 건 19진정0009300 유치장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 나. 진 정 인 ○○○
- 다. 피진정인 1. ○○○
2. ○○○

2. 진정요지

2018. 12. 7.경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진정인은 유치장 입감 전에 다쳤던 왼쪽 갈비뼈 골절 부상과 평소 지병인 고혈압과 신경정신과 질환 등에 따른 복용할 약이 떨어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요청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경찰서 옆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진정인은 병원비가 없어 아무런 진료도 받지 못하였다. 피진정인들은 나중에 다시 병원에 데려 가겠다고 하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구치소로 이송시켰다.

3. 당사자의 주장

-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형사당직 근무 중 진정인 혐의 사건을 인계받아 조사하였다. 진정인이 유치장에 있을 당시 면담을 요청하여 피진정인이 유치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은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병원에 가겠다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혐의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다. 2018. 12. 7.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진정인은 같은 달 2.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 ○○시 소재 ○○호에 나무 목재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직접 치우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9번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퇴근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정인은 병원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2018. 12. 8. 14:00경, 피진정인이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때, 주간 근무 팀인 형사 3팀의 ○○○ 경위로부터 진정인이 병원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치료비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미납 진료비(224,060원)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하여 치료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후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근무하던 중에도 유치장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이 병원치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전날 진정인이 치료를 실시하지 못했던 사유와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토록 하였다.

2018. 12. 8. 진정인은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심사를 받고 경찰서로 돌아오던 중 형사3팀 직원들과 함께 △△△병원에 갔으나, 진정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병원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유치장에 다시 입감되었다.

피진정인은 현재까지 형사과에서 근무를 해오면서 구속피의자들의 병원진료 요구를 고의로 묵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한 것은 당시 진정인이 병원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병원에선 진정인이 과거에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망했던 터라 피진정인으로선 어쩔 수 없었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출감지휘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경찰서 사건 조회 결과 등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12. 7. ○○○○ 및 ○○○○ 피의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피의자이고, 피진정인 1, 2는 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 소속으로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다.

나. 2018. 12. 7. 07:18경 진정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10. 08:00 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몇 차례 요구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아래와 같은 기록들이 확인된다.

1) 유치장에서 진정인이 진통제를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이 진통제 및 감기약을 4차례 지급하였고, 진정인이 혈압 측정을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이 혈압을 3차례 측정(110~173, 164~107, 153~108)하였으며,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4차례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이 형사팀에 전달하였다.(2018. 12. 7. ~같은 달 10.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2) 2018. 3.경 ○○도 ○○ 소재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다.(2018. 12. 7. 피의자신문조서(1, 2회)에서 진정인의 진술)

3) 좌측 9번 갈비뼈 부러졌고, 진정인의 양쪽 발에 압박 붕대를 감고 있다.(2018. 12. 7.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4) 진정인의 질병은 고혈압 및 갈비뼈 골절, 갈비뼈 골절 관련 약물 복용, 분노조절 및 우울증으로 진정인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다.(2018. 12. 7. 피진정인 2가 기안하고 피진정인 1이 결재한 피의자 입감지휘서)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고소(○○경찰서 2019. 1. 11. 접수, 2019-599호)하였고, 동 사건은 2019. 4. 1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5. 판단

인정사실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진정인의 고소로 인하여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한다.

II.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위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18. 12. 7. 07:18경부터 같은 달 10. 08:00까지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계속되는 고혈압 증세, 갈비뼈 골절 부상, 정신질환 등으로 약제 처방을 받기 위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치

료비가 없어 외부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유치인보호관을 통해 진통제만 4차례 제공받을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위 진정사건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경찰관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유치장 구금 기간 중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으로 최소한의 진료조치 받지 못하는 위 진정사건과 같은 상황은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어 진정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는 유치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등 인간의 존엄 및 인도적 처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기준

헌법 1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7조,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87조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제24조,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2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0. 3. 8. 09진인3607), 헌법재판소 결정(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3. 유치장 의료처우의 현실

2017년과 2019년 위원회의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인 의료비 예산이 유치장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각 경찰관서마다 책정되어

있긴 하나, 일부 경찰관서의 경우 유치인 의료비의 집행 실적이 거의 없거나 상비 약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을 위하여 의료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드문 실정에 있다. 이처럼 유치인 의료비 예산의 집행은 기관마다 상이하고 시혜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1조에서는 유치인이 병에 걸린 경우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비해 그 기준이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경찰청 내부 방침에 따르면 유치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경찰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행려병자이거나 부양가족 등 연고자는 있으나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유치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정한 거소와 가족 등이 있으나 사실상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의료처우 및 보호에 있어 상당한 공백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유치인에 대한 의료처우 개선 필요성

가. 유치인에 대한 의료처우와 국가의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

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015. 12. 17.) 제24조 제1항과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88. 12. 9.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 제24원칙에서는 국가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수용자 의료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살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에서는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한 취지는 국가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2010. 3. 8. 09진인3607)는 유치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진통제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규정과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므로 국가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영양 섭취 등 건강 유지와, 위생관리, 질병 치료 등 의료적 보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도개선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국가는 무상으로 검사나 치료 등 의료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단기간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이라 하여 그러한 의무가 일시적으로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치인에게도 무상으로 의료적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유치장의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해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유치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

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 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유치장의 의료처우’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6.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김민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3.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4조 ①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24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의학적인 검사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 치료와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6.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질병 등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병에 걸린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